

종합건설업체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위반 과태료 부과 취소 공고

종합건설업체의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(경기도 공고 제2026-5932호)을 취소하고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08월 13일

경기도지사

상 호 (대표자)	소재지	건설업종 (등록번호)	취소하는 처분	취소사유	근거법령
(주)효천종합건설 (김영진)	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석성로521번길 14-8	건축공사업 (10-4436)	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3호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(500,000원)	1) 이의신청서 제출 2) 계약변경서 제출	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20조 및 제21조